##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79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박 정·김성회·유동수

김성원 · 김주영 · 송옥주

이기헌 · 홍기원 · 김현정

박상혁 · 임오경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 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 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아니하여 접경 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접경지역 의 주민으로서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률 제 호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         |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  |
| 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          | 정) ①               |
| 지역의 조화로운 이용 · 개발과         |                    |
|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          |                    |
| 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                    |
| <u>수립하여야 한다</u> . 이 경우 접경 | 수립하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
|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 <u>이를 변경할 수 있다</u>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                    |
| 야 한다.                     | <u>.</u>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② ~ ⑪ (생 략)               | ② ~ ① (현행과 같음)     |